

# 2019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계획

진안중학교

## I 목적

1.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사의 교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존중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권문화를 정착시킨다.
2.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학교와 가정이 상호 소통하며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배려와 협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 II 기본방침

1.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교실문화와 학교문화를 형성한다.
2. 자치규약 제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생활 규범을 준수하는 자율적 풍토를 만들어 규칙과 약속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건설한다.
3. 사후 처벌의 치료나 교정보다는 예방 중심의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4. 교내·외 학생 교육 활동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5.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지도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기본질서 준수 의식이 함양되도록 한다.
6. 인성인권부·학년부·담임교사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책임지도제 강화 및 전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능력을 높인다.
7.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교육 공동체간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한다.

## III 2018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1. 학교폭력실태조사 현황(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 조사 참여현황

구분	대상학생수	참여현황		피해응답 학생수
		학생수	참여율(전국 중학교)	
2018학년도	126	115	91.3(94.9)	3

### 나. 피해유형(복수응답)

구분	심한 욕설, 놀림, 협박	강제 심부름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맞거나 간힘	사이버 폭력	집단따돌림	기타
2018학년도	3	0	0	1	0	1	1

다. 피해장소(복수응답)

구분	교실안	운동장	화장실	복도	특별실	학교안	사이버공간	기타
2018학년도	3	1	0	0	0	2	0	0

라. 피해시간(복수응답)

구분	등교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하교시간	하교이후	체험활동	기타
2018학년도	0	3	0	0	0	0	0	0

마. 피해신고현황(단위: %)

구분	가족, 친척	선생님, 신고함	117신고센터, 경찰관	친구, 선후배	기타
2018학년도	50	50	0	0	0

2. 피해신고에 대한 분석

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안에서 교실과 운동장에서 학생 간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따돌림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이 나옴.

나. 쉬는시간에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안을 보호자나 학교선생님께 신고하였음.

다. 담임중심, 상담중심의 생활교육 관점으로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요구됨.

IV

세부내용

1. 주요 예방활동 계획

항목	세부내용	시기	주요내용	대상	비고
학생자치 세우기 주간	학생회 조직	3월	민주적 선거절차 준수	전교생	
	학교생활인권 규정		생활인권 규칙과 규범 익히기		
	학급별 생활규정 정하기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학급별 생활 인권 규정 제정하기		
장애인식 개선주간	장애학생 인권 교육	4월	장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교생	
학교 상담 주간	담임중심의 상담활동	연중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심화 면담	전교생	
	학생 상담	3월 1주	신학기 학교생활 적응, 교사와의 래포 형성을 위한 학생 개인별 상담	전교생	
	학부모 상담	3월 3주	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교폭력 등에 대한 상담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계 개선	연중	공동체 참여와 민주적 관계 조성 상호이해를 통한 갈등 조정 등	전교생	연 4시간
	교사, 학부모 연수	3월		교사 학부모	학기별 1회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6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학교 응집력 향상 (전문가 초빙 교육)	전교생	진안교육청

항목	세부내용	시기	주요내용	대상	비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연중	학교폭력 이외 사안 처리	교원	
	학교폭력전담기구	연중	전담기구 해결 사안 처리	교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중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위원회	
	교외 생활 지도	연중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	인성부	
	배움터지킴이 봉사	연중	자원봉사를 통한 학교폭력 방지	인성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교생	
	신고의무자 교육	3월	교직원, 강사 대상 교육	전직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 교육	5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전교생	
	교직원 연수	3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연수	전직원	
	학부모 교육	3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	학부모	
인권교육	학생인권교육	연중	학교생활인권 살피기	전교생	학기당 2회
	교직원, 학부모인권교육	3월 11월	교직원, 학부모대상 인권교육	교직원 학부모	연 2회
	계기수업을 활용한 평화인권 교육	연중	학급별로 계기수업이나 주제를 잡아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활동	전교생	
	교사인권보호 교육	3월 11월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교직원 학부모	학기당 1회
인성교육	학생 인성교육	연중	학생이 주도하는 인성교육 실현	전교생	

## 2.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 2) 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토론문화 정착을 통하여 남을 배려하는 의식 형성
- 3) 아름다운 규칙과 약속이 움직이는 학교 조성 및 주인의식 고취

### 나. 추진 방향

- 1) 학생 자치활동 권장·보호 및 학생 자치기구 활성화
- 2) 학생회 주관 학생회 예산 편성 기회 부여 및 필요하면 교직원회의 학생회장단 참석
- 3) 학생자치회실 등 자치활동 공간 확보
- 4) 정기적인 학생자치회의 실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
- 5)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생회 임원 선출: 3월
- 6) 학생회장단과 선생님과의 대화 운영 분기별 1회

### 다. 학생주도의 학교행사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 1) 졸업식, 입학식, 축제, 스포츠데이 등 학교행사를 학생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
- 2)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 3) 학급회의, 학생회를 참여·토론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로 활용

### 라. 학생자치활동 편성: 창체시간 활용 10시간 편성(권장 사항)

## 3.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 가. 추진배경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
- 2)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함.
- 3)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
- 4)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5)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5항에 준용함.
- 6) 피해를 본 장애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나. 추진일정

- 1) 학기별 1회 실시(연 2시간)
- 2)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 3) 비장애 학생 및 장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다. 기대효과

- 1) 폭력이 없는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 2) 학교폭력 예방 효과 증진
- 3)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의 상호이해를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및 바른 인성 교육 함양

#### 4. 담임중심 생활지도의 강화

가. 형식적 면담이 아닌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월 1회 이상 담임 학생 심화 면담 시행

나. 따돌림의 경우 담임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종례 시간 외 담임 교실 순시를 통한 학급 분위기 파악

다.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가 되도록 학급별 가정통신문 발송 및 전화상담 수시실시

라. 인성인권부, 학년부와 연계한 교내 생활지도 실시

#### 5. 상담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가. 처벌이 아닌 예방과 학생인권보호, 치유 중심의 개방적 학교생활지도부 활동

나. 인성인권부(학교폭력전담기구) 요주의 학생 수시 상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미연에 방지

다. Wee 클래스(상담실)의 활성화

라. 학생 자발적 상담을 위한 홍보 및 담임 관찰, 면담 등을 통하여 필요하면 상담교사에게 의뢰하여 담임·인성인권부·Wee 클래스 간 유기적 학생 맞춤 상담

#### 6. 학교폭력예방 교육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교폭력이 없고 밝고 아름다운 학교문화 정착
- 2)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안전망 구축·운영
- 3) 감성과 소통의 학생생활 지원 서비스로 학생 개인의 역량 극대화

나. 추진일정

- 1)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행
- 2) 예방교육: 학기당 2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 3) 신입학초 신입생 학교폭력예방 오리엔테이션 실시
- 4) 교직원 연수: 학기당 1회 이상(연간 2시간)
- 5) 학부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대상 교육 시행(연간 2시간)

다.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 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3월~5월, 9월~10월
- 2) '친구사랑주간' 운영: 3월, 9월 셋째 주
- 3) 학교폭력 예방활동 캠페인 전개: 3월, 6월, 9월, 12월 중

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협조 체제 구축

- 1) 학생 교육 및 상담 시 학교, 경찰, 병원 및 진안 Wee센터 인적·물적 자원 활용
- 2) 학교폭력예방 민간단체 협력망 구축

마. 기대효과

- 1) 폭력이 없는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 2) 학교폭력 예방 효과 증진
- 3)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교육

## 7.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교감, 인성인권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학년부장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교감, 인성인권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교감, 학부모위원 3인, 전담경찰관 1인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감,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로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 *심의·의결 가능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 조사, 실태 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 *심의(협의)기구로 의결기구가 아님 *경미한 사안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전담기구 해결사안 처리 가능 *학교장 내부결재 후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자치위원회 보고 *추후 자치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경우 개최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역할

구분	성격	구성	처리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적기구	교원, 학부모, 경찰관	학교폭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자치기구	교원	학교폭력 이외 사안 (절도, 흡연, 교칙위반 등)

사. 학교폭력 신고체제 확립

- 1)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 2)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신고함 운영

- 3)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문자신고(#0117) 지속적 홍보
- 4) 전학년 본교 학교전담경찰관 공지(전화번호 홍보)

## 8. 교외 생활 지도

### 가. 목적 및 필요성

- 1)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
- 2) 배회학생 지도 및 폭력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 3) 지속해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

### 나. 지도 방침

- 1) 거리 배회 학생들을 바르게 선도하여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금지구역 및 학업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콜라텍, 게임방, 피시방, 노래방, 당구장 등)

### 다. 실시 계획 및 지도 방법

- 1) 지도시간: 평일 방과후 시간. (16:30 ~ 탄력적으로 운영)
- 2) 순회지도구역은 진안읍내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한다.
- 3) 연합교외 생활지도 및 특별생활지도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4)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5) 교외 순회지도는 인성인권부 교사 및 희망 교사 중심으로 시행한다.

## 9.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운영

### 가. 목적 및 필요성

- 1) 지역사회 전문인력 봉사자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2)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 배치하여 학교폭력 방지

### 나. 운영 개요

- 1) 기간: 2019. 03. 01.- 2020. 02. 29.(기간중 10개월)
- 2) 자격: 퇴직 경찰
- 3) 활동내용: 순수한 자원봉사자이므로 학교장의 위촉으로 봉사함

### 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시간

- 1) 필수시간: 등교시간 및 쉬는시간(07:50~10:50, 3시간)
- 2) 주당 14시간 이내
- 3) 자원봉사시간: 필수시간 외 시간은 자원봉사자가 자율로 봉사함
- 4) 월 20일 운영 원칙

### 라. 주요 활동내용

- 1)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에 학교 내외 순시·순찰
- 2)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 활동
- 3)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연계 활동 등

### 마. 근무 관련 유의사항

- 1) 배움터지킴이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으로 용어 통일 권장
- 2) 배움터지킴이 복장은 정장으로 함
- 3) 배움터지킴이 명찰은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달기
- 4) 배움터지킴이 활동 일지 기록 및 비치

5) 배움터지킴이 활동 결과는 매 학기 말 보고

바. 기대 효과

- 1) 지역사회 전문인력 봉사를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전 차단
- 2) 학교배움터지킴이 배치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 10.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목적 및 필요성

- 1)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 2)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 보호
- 3)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4) 아동학대 예방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나. 추진일정

- 1)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행
- 2) 학생 예방교육: 연 1회 이상(연간 1시간 이상)
- 3) 신학기초 신입생 학교폭력예방 오리엔테이션과 연계
- 4) 교직원 연수: 학기당 1회 이상(연간 1시간)
- 5) 학부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대상 교육 시행(연간 2시간)

다. 교육내용

- 1)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2)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5)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라. 기대 효과

- 1) 가정폭력이 없는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 2) 가정폭력 예방 효과 증진
- 3)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한 아동들의 바른 인성 교육
- 4) 아동학대 예방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 11. 학생인권교육

가. 목적 및 필요성

- 1)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인권 감수성 증진
- 2) 학생의 민주적 참여와 자치의 권리를 보장
- 3)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나. 추진일정

- 1) 학생인권교육 실시
  - 시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 편성: 인권교육 관련 교과시간과 연계
  - 교육내용: 학생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노동인권교육(중3 연 1시간 이상 실시)
- 2) 교직원 인권 인성교육 연수 시행(매주 수요일 교원연수 시간 활용)

- 시간: 연간 4시간
- 편성: 단체 연수 또는 개인별 원격연수
- 교육내용: 교육공동체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다. 참고사항

- 1)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 관련 교육자료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탑재: <http://human.jbe.go.kr>
- 2) 학생회장단 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 참여 안내: 중학교(지역교육지원청 주최)
- 3) 전라북도 학생 인권의 날 운영: 4월 중

## 12. 교사인권보호 교육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 교권 침해로 저하된 교권확립
- 2)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침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3)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유
- 4)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문화 조성

나. 추진일정

- 1) 학생, 학부모, 교사 교권보호 예방 교육 시행
- 2) 예방교육: 학기당 1회 이상(연간 2시간 이상), 관련 교과시간 활용
- 3) 신학기초 신입생 학교폭력예방 오리엔테이션 실시
- 4) 교직원 연수: 학기당 1회 이상(연간 2시간)
- 5) 학부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대상 교육 시행(연간 2시간)

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인적자원 활용

라. 기대효과

- 1)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2)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 3)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교육력 제고

## 13. 학교 인성교육

가. 추진배경

- 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맞게 인성교육의 역할 강화
- 2)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8대 기본 방향」에 따른 인성교육 수립
- 3) 우리교육과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육성
- 4)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범사회적 노력 필요
- 5)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육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2019학년도 학교 인성교육계획수립, 시행

나. 추진목표: 일상 속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현

다. 추진방향

- 1) 자치학생회 연간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 2) 일상 속 예절과 배려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강구
- 3)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 현실에 맞는 인성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4) 기부, 캠페인,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5) 수업 속에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소재 발굴, 장려  
 라. 주요 운영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예절바른 학생 상 정립	▷ 인사 잘하기,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자치학생회가 주도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추진	▷ 학급 별 자치위원들 중심의 학생 의견 수렴, 참여 독려 ▷ 학생회 한해 사업과 연계하여 자발적 변화 유도 ▷ 인성 연수를 통해 밝고 따뜻한 학교 분위기 조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평가	▷ 자율선택과제로 '자치와 수업 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 채택 ▷ 2학기 말, 학생회와 인성부가 연합하여 전체 평가 연찬회 기획

마. 세부 추진계획

■ 평가지표

- ①자기관리역량    ②심미적감성역량    ③의사소통역량    ④갈등관리역량    ⑤공동체역량

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담당	시기	예산 (천원)	평가지표					
					①	②	③	④	⑤	
예절바른 학생상 정립	<b>추진과제 1 행복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b>									
	▷ 인사를 잘 하는 학생이 됩시다 - 친구끼리 인사하기, 건물 내 어른에게 공손하기	인성 인권	3월				√	√		
	▷ 상황에 맞는 대화예절 갖추기 - 수업 예절, 질문 예절, 친구에게 상처주지 않기	인성 인권	3월				√	√		
자치학생회가 주도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추진	<b>추진과제 2 학생이 주도하는 인성교육</b>									
	▷ 학급자치위원회제 시행 - 학급 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한 학급 내 갈등 고민 - 주기적인 자치위원회의	인성 인권	연중						√	√
	▷ 인성 관련 학생회 공약 시행 - 2018학년도 학생회 공약	인성 인권	연중		√					√
	▷ 우리가 실천하는 환경운동, 공동체 회복 운동 - 분실물 찾아주기 '선행감투상' 선정(학기말 시상) - 전교생 기부 프로젝트 실천 (불우이웃 돕기 모금운동, 일일카페 수익금 기부)	인성 인권	학기 말			√				√
	▷ 자율선택과제 '자치와 수업 중심의 인성교육' 채택 - '마음을 전해요' 편지쓰기 행사 주도 - 인성부와 인성교육 특강 공동 추진(교직원, 학생) - 인성 관련 공모전 주최(표어 및 포스터)	인성 인권	5월		√	√	√			√
▷ 갈등관리와 공동체 함양을 위한 학급모델 운영 - 인성인권 우수학급,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급	인성 인권	연중						√	√	
교사역량 강화	<b>추진과제 3 교원 연수를 통한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b>									
	▷ 전 교사 인성 연수 독려 - 집합연수 또는 개별 연수 한 해 4시간 확보 - 1학기 : 학생회와 함께 하는 인성 연수 참여 - 2학기 : 교직원 연찬회 일정 중 집합 연수 진행	인성 인권 교무	7월, 12월						√	√

1. 학교의 교육적 선도기능 복원을 위한 사안처리 개선 방안 건의
  - 가. 단순,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장
  -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요구
  
2.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Wee센터 역량 강화
  - 가. 학교 전문상담교사 지속적인 정원 확대 건의
  - 나.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과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Wee센터 역량 강화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개선 요구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지역교육청으로 역할 이전
  - 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함에 따라 사안에 대한 중립성과 정문성 약화
  - 다.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위원의 위촉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존재
  - 라. 학부모 위원의 수와 선출절차를 학교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개선